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99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박홍근·전용기·조정식
한정애·이정문·박희승
안태준·송재봉·정일영
김문수·윤종균·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의”를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로,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u>국</u> <u>민의</u>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 고 <u>자유 민주주의</u>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5조(국군의 강령) ①-----<u>독</u> <u>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u> <u>승한 국민의</u>----- -----<u>자유민주적 기본질서</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